

BNK 부산은행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



- 장 소 : 부산은행 대전영업부(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64,건물뒤 화신주차장 주차가능)
- 날 짜 : 2022.4.4~2022.4.8

※대출신청 시 분양계약자 본인이 직접 신청 하시고, 아래 **필요서류 및 개인 방역물품** 필히 지참하시어 방문 부탁드립니다.

1) 기본서류 (공동분양자인 경우: 동일하게 1부씩 추가 준비)

- ① 분양계약서 원본
- ②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
- ③ 주민등록등본 1부(미혼,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추가, 주민번호 전체공개필수,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)
- ④ 주민등록초본 1통(세대원 각각, 상세내용포함,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초본발급 필수,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)
- ⑤ 가족관계증명서(계약자 본인기준,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)
- 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계약자본인 기준 (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),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직접방문 또는 팩스신청 (1577-1000)

2) 소득증빙자료(다음 중 택1)

- ① 개인사업자인 경우: 사업자등록증, 소득금액 증명원,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
- ② 근로소득자인 경우: 재직증명서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
- ③ 기타소득자인 경우: 아래 3가지 중 택1
 - 신용카드사용내역서(연말정산용) + 사실증명원(필수)
 -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(6개월) + 사실증명원(필수)
 - 국민연금관리공단 발급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(6개월) + 사실증명원(필수)

3) 유의사항

- ① 해당 "투기과열지구"는 금융감독원 지시사항으로 중도금대출 취급 시 세대원의 주택보유수 검증이 필수사항으로 본건 중도금대출 신청 시 차주와 공동소유자 및 모든 세대원이 동일 날짜에 함께 방문해 주십시오. ⇨ 공동소유자 및 세대원: 신분증 지참(필수)
 ※**부득이 미방문 세대원은 첨부된 위임장 작성으로 갈음합니다.**
- ② 단, 세대원 중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위임 받아, 자서 예정이므로 미성년 자녀 방문은 필요 없으며 아래 서류를 추가준비하여 방문해 주십시오,
 ⇨ 기본증명서(미성년 자녀 각각 상세내역필수, 동사무소 발급)

공통
필요서류

1) 인지세

대출금액	5천만원 이하	5천만원 초과~1억원 이하	1억원 초과~10억원 이하	10억원 초과
인지세액	비과세	7만원(각각 3만5천원)	15만원(각각 7만5천원)	35만원(각각 17만5천원)

*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%씩 부담

2)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 보증료

- ① 보증료 할인 자격기준 뒷면 참고 (할인 증빙 서류 직접 지참하셔서 상담시 제출 요청드립니다.)

부대비용

알아두실
사항

- 1) 대출약정은 모바일 뱅킹으로 진행 예정으로, 사전에 모바일계좌개설(인지세 및 보증료 입금) 및 전자금융 + 공동인증서 가입이 필요합니다. (본인명의 핸드폰, 사전 한달(20영업일) 이내 타행 계좌 미 개설 필요)
- 2) 중도금 대출 약정 등록 일정은 추후 연락 드립니다.
- 3) 구비서류는 서류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이어야 합니다.
- 4) 공동명의 계약자의 경우 명의자 각각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고 계약자 전원이 함께 방문하셔야 합니다.
- 5) 대출은 중도금 납부일에 분할 실행되어 분양대금 납부 계좌에 직접 입금됩니다.
- 6) 정부정책 및 개인에 따라 추후 대출자격 및 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또한 **중도금대출 서류접수만으로 대출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,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요건을 충족해야 대출이 최종 확정됩니다.**
- 7) 은행의 내규 등에 의한 대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됩니다.
- 8) 이 안내장의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, 약관의 주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실제 상품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,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.

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할인 자격기준

대상	자격요건	제출서류
저소득가구 (40%할인)	· 배우자포함연소득이40백만원이하인자	· 배우자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·배우자가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재직증명서, 원천징수영수증제출
다자녀가구 (40%할인)	· 세대원중미성년자가3인이상	· 주민등록등본+가족관계증명서
장애인가구 (40%할인)	· 세대원중장애인이있는경우	· 주민등록등본+장애인증명서
노인부양가구 (40%할인)	·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, 보증신청인(배우자포함)의 직계존속인 세대원 중 1인이상이 만65세 이상인 고령자가구 또는 노인부양가구 (노인부양가구의 경우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동일한 세대 조건) 단, 보증신청인이 단독세대주인 만6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 60%할인	· 주민등록등본
신혼부부 (40%할인)	· 보증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6천만원 이하+혼인기간이 7년 이내	· 혼인관계증명서+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·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재직증명서, 원천징수영수증제출 ·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는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
한부모가족 (60%할인)	· 보증신청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인 경우	· 한부모가족확인서
만65세 이상 고령자 (60%할인)	· 보증신청인이 배우자, 직계존비속, 친족 등의 동거인 없이 단독세대주인 65세 이상의 고령자	· 주민등록등본
다문화가족 (40%할인)	· 보증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 또는 귀화로 국적을 취득한 자 · 배우자 있는 피보증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	·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(출입국관리사무소) + ·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국가유공자 (40%할인)	·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, 세대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(유족포함) ☞ 국가유공자 ☞ 보호대상자 ☞ 고엽피해자 ☞ 독립유공자 ☞ 특수임무유공자 ☞ 5.18민주유공자	· 각 대상자별 증명서(유족증사본) 또는 각 대상자 확인원(유족증확인원)제출
의사상자 (40%할인)	피보증인 또는 배우자, 세대구성원 중 해당하는 경우(유족포함)	의사자(유족)증사본 또는 의사자(유족)증서
모범납세자 (10%할인)	모범납세자	모범납세자 증명서(발급 1개월 이내) 또는 국제청장 이상(장관, 국무총리, 대통령의 훈장, 표창, 산업포상